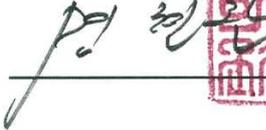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2. 21.)에서 의결된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2월 26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2761호

붙임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1부.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 명칭, 각종 위원회 직위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소관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되는 상위 법령의 제명과 조문번호, 정비가 필요한 용어와 문장 등을 일괄개정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내용) 해남군 조례 조문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 명칭, 상위 법령 제명과 조문번호 및 정비가 필요한 용어와 문장 등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3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조례 일괄개정 대상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 행	개정안	
1	기획실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6조	기획홍보실장	업무담당팀장	명칭 변경
2	기획실	해남군보 발행조례	제6조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3	기획실		제7조제1항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기획실 기획실장	명칭 변경
4	기획실		제7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5	기획실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11조제4항	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기획실장 관광과장 건설주택과장	명칭 변경
6	기획실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7	기획실		제20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8	기획실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5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9	기획실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10	기획실	해남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용어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안	
11	기획실	해남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기획홍보실	기획실	명칭 변경
12	기획실		제4조제1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13	기획실		제6조제1항	기획홍보실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를 담당하는	명칭 변경
14	기획실		제7조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15	인구정책과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지역개발과장	기획실장 인구정책과장	명칭 변경
16	인구정책과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9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친환경농산과장 지역개발과장	기획실장 농정과장 인구정책과장	명칭 변경
17	인구정책과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	지역개발과장 기업도시사업소장	인구정책과장 경제산업과장	명칭 변경
18	인구정책과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	보건소	인구정책과	명칭 변경
19	인구정책과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보건소장	기획실장 인구정책과장	명칭 변경
20	인구정책과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주민복지과장 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과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21	인구정책과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제7호	주민복지과장	인구정책과장	명칭 변경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 행	개정안	
22	인구정책과	해남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2조제2항	주민복지과장	인구정책과장	명칭 변경
23	인구정책과		제12조제2항제1호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기획실장 인구정책과장	명칭 변경
24	인구정책과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2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용어 정비
25	인구정책과		제22조제2항	주민복지과장	인구정책과장	명칭 변경
26	인구정책과		제22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27	인구정책과		제22조제4항	담당주사	팀장	명칭 변경
28	인구정책과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인구정책과장	명칭 변경
29	인구정책과		제11조제3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인구정책과장	명칭 변경
30	인구정책과		제13조제1항	농업기술센터	인구정책과	명칭 변경
31	주민복지과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32	주민복지과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구성및운영조례	제8조	잔임기간	남은 기간	용어 정비
33	주민복지과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제1호	생활보호대상 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청소년	용어 정비
34	주민복지과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익일	다음날	용어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안	
35	주민복지과	해남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해남교육청	해남교육지원청	명칭 변경
36	종합민원과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제2조제2항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	상위법령 조항 변경
37	종합민원과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제명 변경
38	종합민원과		제7조	공간정보팀장	지적재조사팀장	명칭 변경
39	종합민원과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및 용어 정비
40	종합민원과		제21조제1항	공간정보팀장	지적재조사팀장	명칭 변경
41	종합민원과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안전건설과장	건설주택과장	명칭 변경
42	안전도시과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재난피해자	피해주민	용어 정비
43	안전도시과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용어 정비
44	안전도시과		제8조제2항제6호	지역자율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	용어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안	
45	안전도시과	해남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제4항	친환경농산과장 안전건설과장 축산진흥사업소장	농정과장 안전도시과장 축산사업소장	명칭 변경
46	안전도시과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제3조제2항제6호 제3조제2항제8호 제3조제2항제10호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 한국농촌공사해남지사장 한국전·공사해남지사장 안전건설과장	완도해양경찰서장 한국농어촌공사해남지사장 한국전력공사해남지사장 안전도시과장	명칭 변경
47	안전도시과		제6조제5항	안전건설과장	안전도시과장	명칭 변경
48	안전도시과	해남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제1호	안전건설과장	안전도시과장	명칭 변경
49	안전도시과		제2조제2호나목 제3조제4항제3호 나목, 다목	향토예비군	예비군	용어 정비
50	안전도시과	해남군 경관 조례	제27조제3항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관광과장 안전도시과장 건설주택과장	명칭 변경
51	총무과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별표1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경제산업과 안전도시과, 건설주택과	명칭 변경
52	총무과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6조제3항 제1호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53	총무과		별지 제4호 서식	담당주사	담당팀장	명칭 변경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안	
54	총무과	해남군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	부위원장에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위원에 주민복지과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환경교통과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한다.	부위원장에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에 군정혁신단장, 주민복지과장, 안전도시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관광과장, 환경교통과장 등 10명의 의원으로 한다.	명칭 변경 (직제순)
55	총무과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기획홍보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실장 군정혁신단장	명칭 변경
56	총무과	해남군 정보화 조례	제6조제3항제2호	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과장	기획실장 관광과장	명칭 변경
57	총무과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제7조제3항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화예술과장	명칭 변경
58	총무과		제7조제4항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명칭 변경
59	총무과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환경교통과장	부군수, 기획실장, 종합민원과장, 안전도시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예술과장, 건설주택과장, 환경교통과장	명칭 변경 (직제순)
60	농정과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제15조제4항	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61	농정과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5조제2항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명칭 변경
62	유통지원과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사업소장	명칭 변경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 행	개정안	
63	관광과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제2호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	완도해양경찰서장	명칭 변경
64	관광과		제20조제2항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 담당자가 된다.	명칭 변경
65	관광과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3항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관광과장 안전도시과장	명칭 변경
66	관광과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문화관광과장	관광과장	명칭 변경
67	관광과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제1호	문화관광과장	관광과장	명칭 변경
68	관광과		제6조제4항	문화관광과장 기획홍보실장	관광과장 기획실장	명칭 변경
69	문화예술과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제17조제2항	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명칭 변경
70	문화예술과		별표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범위)	문화관광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명칭 변경
71	문화예술과	해남군립예술단 설치조례	제3조제1항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화예술과장	명칭 변경
72	문화예술과		제13조제3항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화예술과장	명칭 변경
73	문화예술과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명칭 변경
74	문화예술과		제13조제4항	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명칭 변경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행	개정안	
75	문화예술과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11조제2항	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과장	기획실장 문화예술과장	명칭 변경
76	문화예술과		제15조제2항	문예관광팀장	문화예술팀장	명칭 변경
77	문화예술과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3조제3항	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명칭 변경
78	문화예술과	해남군도서관및독서진흥에 관한조례	제6조	문화관광과장 업무담당주사	문화예술과장 업무담당 팀장	명칭 변경
79	문화예술과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1호~제4호 (입장권 서식)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문화예술과	명칭 변경
80	경제산업과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부칙 제3조	지역개발과	경제산업과	명칭 변경
81	경제산업과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지역개발과장	경제산업과장	명칭 변경
82	경제산업과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	지역개발과장	경제산업과장	명칭 변경
83	건설주택과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안전건설과장 각 호의 자가 된다.	건설주택과장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
84	건설주택과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제4조제3항	문화관광과장 종합민원과장	관광과장 건설주택과장	명칭 변경
85	건설주택과		제4조제5항	잔여기간	남은 임기	용어 정비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호	개정내용		비고
				현 행	개정안	
86	건설주택과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조	「주택법」제43조제8항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상위법 제명 및 조항 변경
87	건설주택과		제2조제1호 가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법 제14조	상위법 제명 및 조항 변경
88	건설주택과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법 제2조제2호 법 제2조제6호	법 제2조1항제1호 법 제2조1항제3호	상위법 제명 및 조항 변경
89	건설주택과		제7조제3항	기획홍보실장 안전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기획실장 안전도시과장 건설주택과장	명칭 변경
90	건설주택과		제8조제3항	건축팀장	주택행정팀장	명칭 변경
91	건설주택과		제9조	잔여기간	남은 임기	용어 정비
92	산림녹지과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안전도시과장
93	농업기술센터	해남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친환경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친환경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BM활성수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변경
94	농업기술센터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7항	생활자원팀장	업무담당 팀장	명칭 변경
95	농업기술센터		제12조제2항	농산물가공창업아카데미 심화반	농산물가공창업교육	명칭 변경
96	스포츠사업단	해남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제1호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스포츠사업단장	명칭 변경
97	축산사업소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축산진흥사업소	축산사업소	명칭 변경

[별지]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범위(제13조의2 관련)

연 번	분 야	사 업 명	담당부서
1	전통문화	향교 청소년 예절교실 지원	주민복지과
2	전통문화	명량역사 체험마당	관광과
3	전통문화	북평용줄다리기 보존 행사	관광과
4	전통문화	강강술래출연비 지원	문화예술과
5	전통문화	계곡방춘서원 삼상사 추모대제	문화예술과
6	전통문화	국악협회 읍면 분회 사업 지원	문화예술과
7	전통문화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	문화예술과
8	전통문화	남도국악제 참가	문화예술과
9	전통문화	단군전 추모대제	문화예술과
10	전통문화	마을전통민속잔치 육성 지원	문화예술과
11	전통문화	만의총 추모대제	문화예술과
12	전통문화	전국국악경연대회	문화예술과
13	전통문화	전남민속예술제참가 지원	문화예술과
14	전통문화	전라우수영 대보름 용쟁이 축제	문화예술과
15	전통문화	향교 기로연	문화예술과
16	전통문화	향교 석전대제	문화예술과
17	전통문화	향교 성년례 및 작명례	문화예술과
18	전통문화	향교 원사 추모대제	문화예술과
19	전통문화	초의문화제	문화예술과
20	전통문화	해남민속장기대회	문화예술과
21	전통문화	이충무공 탄신 다례행사 지원	관광지관리 사업소
22	문학	고산문학선양 문화대전	문화예술과
23	문학	고정희 문화제	문화예술과
24	문학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문화예술과
25	문학	공재문화제	문화예술과
26	문학	김남주문학제	문화예술과
27	문학	문학지 발간	문화예술과

연 번	분 야	사 업 명	담당부서
28	문학	작은도서관 지원	문화예술과
29	음악회	땅끝송호해변 푸른음악회	관광과
30	음악회	땅끝작은음악회	관광과
31	음악회	군민화합을 위한 음악회 지원	문화예술과
32	음악회	오기택배 전국 가요제	문화예술과
33	문화일반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 지원	관광과
34	문화일반	땅끝해남관광사진공모전	관광과
35	문화일반	어촌체험문화행사	관광과
36	문화일반	북일오소재 해맞이 행사	관광과
37	문화일반	템플스테이	관광과
38	문화일반	해변 개장 용왕제	관광과
39	문화일반	군민화합을 위한 연등축제	관광과
40	문화일반	마을미술 프로젝트	문화예술과
41	문화일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과
42	문화일반	사립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	문화예술과
43	문화일반	삼호학당 강의 지원	문화예술과
44	문화일반	서산대제 및 나라사랑글쓰기대회	문화예술과
45	문화일반	전남연극제	문화예술과
46	문화일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문화예술과
47	문화일반	청소년연극제	문화예술과
48	문화일반	청소년해남예술아카데미	문화예술과
49	문화일반	해남문화원 문화강좌 등 지원	문화예술과
50	문화일반	해남문화원 운영 지원	문화예술과
51	문화일반	해남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문화예술과
52	문화일반	해남예술제	문화예술과
53	문화일반	향교 도덕성 회복운동	문화예술과
54	문화일반	읍·면지 발간 지원	문화예술과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2. 21.)에서 의결된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2월 26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2762호

붙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부.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한다.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다만, 기금 조성액이 일반회계 규모의 20%를 초과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군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6.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② 「지방재정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적립금 총액 중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해남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해남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행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실장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2. 21.)에서 의결된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2월 26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2763호

붙임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하“저소득층”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를 “저소득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u>의 교육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u>(이하 "수급자"라 한다)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p> <p>제3조(지원사업) <u>수급자</u>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u>----- ----- ----- -----.</p> <p>제2조(지원대상) ----- ----- ----- -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층" 이</u>-----.</p> <p>제3조(지원사업) <u>저소득층</u>----- ----- --.</p> <p>1. ~ 3. (현행과 같음)</p>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2. 21.)에서 의결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2월 26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2764호

붙임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호 중 “**신상**” 을 “**사상**”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동율**” 을 “**행동률**”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사로운**” 을 “**사적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 를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복명은 구술**” 을 “**결과 보고는 말**”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 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 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 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

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다른 정상 근무일에” 를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18조제2항 및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금법 제25조제1항내지” 를 “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로,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를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으로써” 를 “공무원으로서” 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의 부분 중 “ 제19조제3항” 을 “제19조제5항” 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2와 제19조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2 (연가 당겨쓰기)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

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19조3 (연가 사용의 권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0조제4항” 을 “제20조제7항” 으로 한다.

제22조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때

제22조제9호 중 “헌열” 을 “헌혈”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 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5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2항 본문 중 “**불임치료**” 를 “**난임치료**” 로, 같은 항 단서 중 “**난자**” 를 “**여성공무원은 난자**” 로 하며 , 같은 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3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⑮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 2의 제목을 “**공직자의 행동율령**” 에서 “**공직자의 행동률**” 로 하며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	배우자	10일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

공직자의 행동률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사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비밀엄수) (생 략) 1·2. (생 략) 3. 개인의 <u>신상</u>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p> <p>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생 략)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u>행동율</u>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u>사사로운</u>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생 략)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u>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u> 소속기관의 장에게 <u>복명서</u>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u>복명</u>은 구술로 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3조의2(비밀엄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u>사상</u>----- ----- ----- -----.</p> <p>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현행과 같음) ② ----- ----- <u>행동률</u>----- -----</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 ----- ----- ----- ----- <u>사적인</u> ----- -----.</p> <p>② (현행과 같음) ③ ----- ----- <u>사무실로 돌아</u> <u>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u> ----- <u>결과 보고서</u>-----.</p> <p>----- <u>결과 보고는 말</u>-----.</p> <p>④ (현행과 같음)</p>

제12조(복장) ① (생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② ③(생략)

<신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생략)

<신설>

<신설>

제12조(복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3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3조 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무원 연금법 제25조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한 휴직

2.·3. (생략)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
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
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생략)

2.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
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신 설>

----- 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

-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3. (현행과 같음)

③ -----

----- 공무원으로서 -----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5항의 -----

제19조2 (연가 당겨쓰기)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19조3 (연가 사용의 권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신 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삭 제>

⑥ 군수는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 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되 별표2의 경조사로 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수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 당해년도 연가
일수

12월

<신 설>

-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해당
연도
연가
일수

12개월

X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신 설>

<신 설>

1. ~ 4. (생략)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7. (생략)
8.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 할 때
10. (생략)
<신 설>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되, 휴기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7. (현행과 같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
-- 헌혈-----
10. (현행과 같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

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삭 제

⑦ ~ ⑩ (생 략)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

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 5. (생략)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⑬ (생략)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1. ~ 5. (현행과 같음)

⑫ 난임치료 -----

여성공무원은 난자-----
-----.

⑬ (현행과 같음)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 설>

⑮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⑯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율령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신 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5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2. 21.)에서 의결된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2월 26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2765호

붙임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의·행사 참가자 중 군민을 제외한 외지 참가자나 외국인이 참가시

제1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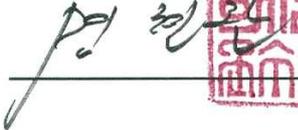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u>군 관할구역 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을 한 국내외 단체 관광객(일반은 30명 이상, 학생은 40명 이상)을 유치한 경우</u></p> <p>2. ~ 4. (생략)</p> <p>제13조(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등의 지원) 군수는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는 회의·행사 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u>회의·행사 참가자중 군민을 제외한 외지 참가자가 1일 150명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이 참가시</u></p> <p>2. <u>제1호에 해당하는 회의 참가자가 군 관할구역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경우</u></p>	<p>제12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 ----- ----- ----- -----.</p> <p>1. <u>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13조(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등의 지원) ----- ----- ----- ----- -----.</p> <p>1. <u>회의·행사 참가자 중 군민을 제외한 외지 참가자나 외국인이 참가시</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제14조(숙박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에서 규정한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u>군 관할구역 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을 한 국내외 단체관광객(일반은 30명 이상, 학생은 40명 이상)을 유치한 경우. 다만, 내국인 단체관광객 지원은 협약에 의한다.</u></p> <p>2. (생략)</p>	<p>제14조(숙박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 ----- ----- ----- ----- ----- ----- ----- ----- -----.</p> <p>1. <u>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u></p> <p>2. (현행과 같음)</p>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2. 21.)에서 의결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2월 26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2766호

붙임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개발행위에 따른 용어의 정의)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시설물(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의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 가. 발전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 나. 도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다목부터 라목의 시설
 - 다.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나목부터 마목의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이용중인 구국도(지방도)를 포함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폭 6미터 이상)
 - 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라 고시된 농어촌도로(면도이상)
3.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기준은 주택 부지의 경계(부지가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건축벽면)에서 주택 간 직선거리가 100미터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
5.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

한다.

6. “관광지 및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7.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8.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9. “우량농지”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집단화 된 농지를 말한다.

10. 공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1. “거리”란 해당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척이 150퍼센트 이하.

제19조제1항제1호를 헥타르 당 평균 입목축척이 150%이하.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 평균입목축척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상의 산정 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1의3 비고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법 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 국도 및 지방도 포함) 및 군계획시설 도로로부터 500미터

6. 제19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시설은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제1호 중 “병원, 경로당, 축사”를 “병원”,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제외)

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2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도축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도로로부터 100미터
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100미터(저수지 상류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함)
3. 1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10호미만 100미터)
4.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5.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로부터 500미터

제19조의5(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도로로부터 100미터
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100미터(저수지 상류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함)
3. 1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10호미만 100미터)
4.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5.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로부터 500미터

②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또는 차폐식재)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로, “경관조성”을 “경관”으로, “금

액을 말한다”를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32조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3조 제목 “(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을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4조제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2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0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5장제2절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형태제한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남군

경관계획을 따른다.

제5장제3절(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6조 제목“(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80조”로, “학교시설보호 지구”를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제47조 제목“(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을“(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 지구에서는”을 “영 제76조의규정에 의한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

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적 관람장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의 공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가목의 아파트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9조”를 “영 제79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4조에”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안전도시과장, 건설주택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시설물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특정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8조의2 (특정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영 별표 1의 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u>1. “특정시설물(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의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u>가. 발전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u></p> <p style="padding-left: 2em;"><u>나. 도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다목부터 라목의 시설</u></p> <p style="padding-left: 2em;"><u>다.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나목부터 마목의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u></p>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이용중인 구 국도(지방도)를 포함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 계획시설도로(폭 6미터 이상)

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라 고시된 농어촌도로(면도이상)

3.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기준은 주택 부지의 경계(부지가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건축벽면)에서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

5.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

법」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 함)을 말한다.

6. “관광지 및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 된 지역을 말한다.

7. “하천”이란 「하천법」 제2 조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 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8.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9. “우량농지”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집단화된 농지를 말한다.

10. 공공시설이란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장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균
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
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
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
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
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별
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
용되는 같은법 규칙 별표1 비
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다.

가.·나. 삭 제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
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경사도 조사방법 별표 24에
의함.)

한다.

11. “거리”란 해당시설 등의 경
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를 말
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척이 150
퍼센트 이하. -----

----- 평균입목축척 -----

2. -----.

-----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3. (생 략)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도시생태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
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도시생태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
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다만,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등급이
구분된 경우에 한함.)

② (생 략)

제19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의 기준) ① (생 략)

1.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
로부터 500미터

2. ~ 5. (생 략)

<신 설>

②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
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
국도 및 지방도 포함) 및 군계
획시설 도로로부터 500미터

2. ~ 5. (현행과 같음)

6. 제19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
고 산지 내 태양광 시설은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로 한다.

② -----

-----.

1. -----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500미터

2. 3. (생략)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병원,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제외)

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2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4(도축시설에 대한 허가 의 기준) 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 도로로부터 100미터

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100미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함)

3. 1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10호미만 100미터)

<신 설>

- 4.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 5.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시설 (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로부터 500미터

제19조의5(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도로로부터 100미터
- 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100미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함)
- 3. 1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10호미만 100미터)
- 4.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 5.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시설 (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로부터 500미터

②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또는 차폐식재)설치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 ① -----
----- 기반시설
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신 설>

<신 설>

확보-----
----- 경관 -----
----- 범위에서 산정
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
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산지에
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
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
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
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
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
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
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
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 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 13. (생략)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 15. (생략)

제33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 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 15. (생략)
-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 17. (생략)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 5. (생략)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산계수는 0.4로 한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 제한) -----

-----.

- 1. ~ 13. (현행과 같음)
- 14.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15. (현행과 같음)

제33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 제한) -----

-----.

- 1. ~ 15. (현행과 같음)
- 16.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17. (현행과 같음)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

- 1. ~ 5. (현행과 같음)
- 6.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생 략)

제35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 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7.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삭 제>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
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생략)
2.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
미터 이하
3. 전통경관지구 : 4층 또는 16
미터 이하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에
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0
0분의 15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

-----.

1. (현행과 같음)
2. 특화경관지구 -----

<삭 제>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

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창고시설

-----.

제40조의2(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형태제한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남군 경관계획을 따른다.

<삭 제>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 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미관 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
폐조경 등 미관보호 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
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
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
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
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
른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
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
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

<삭 제>

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식수를 식재하는 경우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 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 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결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45조(미관지구에서의 부속건축

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 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 11. (생략)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 13. ~ 15. (생략)

<신 설>

<삭 제>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

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 특정용도 제한지구안-----

--.

- 1. ~ 11. (현행과 같음)
- 12.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13. ~ 15.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방재지구안에서의 건

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제47조(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의규정에 의한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9호

 5. ----- 제10호
의 교육연구시설-----

 6. ----- 제16호

 7. ----- 제18호

 8. ----- 제19호

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나. (생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6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

9. ----- 제20호

10. ----- 제21호

11. -----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가.·나. (현행과 같음)

13. ----- 제26호

<삭 제>

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
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
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갇셈·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 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삭 제>

제외한다.)

<신 설>

제49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적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 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 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 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문화지구

4. 보행자우선지구

5.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삭 제>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4】 입목본수도조사 및 경사도 조사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관련) (삭제)**

□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 가. 조사 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

(1) 조사야장 양식

입목본수도 조사야장

조사일시 :
조사자(직) (성명)

가슴높이직경 (cm)	계	측정본수	비 고
총 계			

(2) 조 편성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재요령

- ① 가슴높이직경은 입목본수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 ② 측정본수는 수중에 상관없이 정(正)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4) 가슴높이직경 측정

- ① 가슴높이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 (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지상 1.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 ③ 가슴높이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본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가슴높이점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 1본으로 간주한다.

- ④ 가슴높이점에 혹 또는 웅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가슴높이 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 ⑤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5) 산출방법

- ① 측정이 끝나면 각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 ②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다.
- ③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해당되는 ha당 정상 입목본수를 m²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 ④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m²) × 정상입목본수(본 / m²)
- ⑤ 입목(본수)도(%) = $\frac{\text{대상지 현재 생육본수}}{\text{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times 100$

3. 입목본수 기준표

가슴높이직경 (cm)	ha당 정상 입목본수 (본)	가슴높이직경 (cm)	ha당 정상 입목본수 (본)	가슴높이직경 (cm)	ha당 정상 입목본수 (본)
3미만	3,000	15이상 17미만	820	29이상 31미만	390
3이상 5미만	2,350	17이상 19미만	730	31이상 33미만	360
5이상 7미만	2,040	19이상 21미만	630	33이상 35미만	330
7이상 9미만	1,740	21이상 23미만	570	35이상 37미만	300
9이상 11미만	1,400	23이상 25미만	510	37이상 39미만	280
11이상 13미만	1,150	25이상 27미만	470	39이상 41미만	260
13이상 15미만	980	27이상 29미만	430	41이상	240

[예시]

■ 매목조사야장

조사일시 :
 조사자 : (직) (성명) ㉠

가슴높이직경(cm)	계	본 수	비 고
07이상 09미만	25	正正正正正	
09이상 11미만	21	正正正正一	
11이상 13미만	15	正正正	
13이상 15미만	6	正一	
15이상 17미만	1	一	
17이상 19미만	1	一	
총 계	69		

■ 입목분수도 산출

구 분 \ 평균직경	총 계	8cm	10cm	12cm	14cm	16cm	18cm
본 수	69	25	21	15	6	1	1
직경소계	708	200	210	180	84	16	18

- 대상지 면적 : 1000m²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cm ÷ 69본 = 10.3cm
- 10cm, 1ha당 정상 입목분수 : 1,400본 (m²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분수 : 1,000m² × 0.14본/m² = 140본
- 입목분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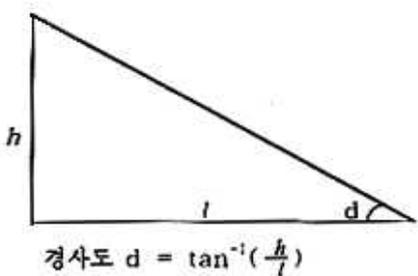
□ 경사도 조사방법 (제12조 관련)

1.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 (2)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내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 내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사도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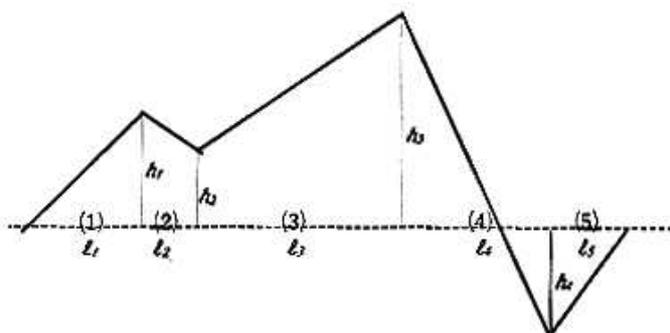
(1) 일반적인 경우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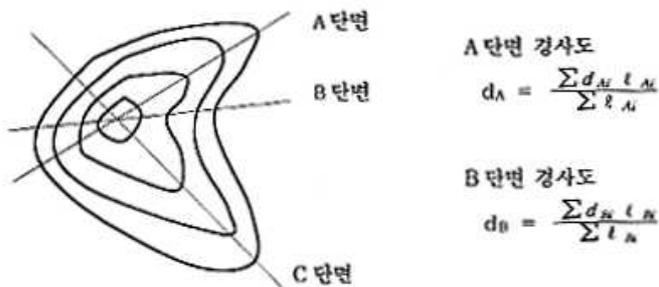
구 간	평면거리	고저차	구간별 경사도	경사도 가중치
(1)	l_1	h_1	$d_1 = \tan^{-1} \frac{h_1}{l_1}$	$d_1 l_1$
(2)	l_2	$h_1 - h_2$	$d_2 = \tan^{-1} \frac{h_1 - h_2}{l_2}$	$d_2 l_2$
(3)	l_3	$h_3 - h_2$	$d_3 = \tan^{-1} \frac{h_3 - h_2}{l_3}$	$d_3 l_3$
(4)	l_4	$h_3 + h_4$	$d_4 = \tan^{-1} \frac{h_3 + h_4}{l_4}$	$d_4 l_4$
(5)	l_5	h_4	$d_5 = \tan^{-1} \frac{h_4}{l_5}$	$d_5 l_5$

$$\begin{aligned} \text{전체 경사도 } d &= \frac{d_1 l_1 + d_2 l_2 + d_3 l_3 + d_4 l_4 + d_5 l_5}{l_1 + l_2 + l_3 + l_4 + l_5} \\ &= \frac{\sum d_i l_i}{\sum l_i} \end{aligned}$$

d_i : i 구간 경사도
 l_i : i 구간 평면거리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단면을 설정하며 위(2)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d_{Ai} : A 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_{Bi} : B 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_{Ai} : A 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_{Bi} : B 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전체 경사도 $d = \text{Max}(d_A, d_B, d_C, \dots)$

【별표 25】 표고 산정 방식(제19조제1항제3호 관련)

1. 표고의 기준

표고의 기준은 대상지역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표고의 산정

가. 대상지역의 토지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도로를 기준

- 1)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폐지된 구 국도(지방도)를 포함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결정된 도로

나. 기준점 : 대상토지(허가신청 부분)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의 도로 중심점 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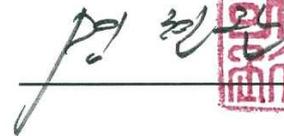
3. 표고적용의 예시

기준표고로 산정된 지역의 표고가 200미터이면 이 높이를 0미터로 보고 50미터 미만이란 기준표고 200미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높이 50미터를 더하면 250미터로 이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높이가 된다.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2019. 2. 21.)에서 의결된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2월 26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2767호

붙임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1부.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자동차 대여사업 제외)
2. “여객시설”이란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을 말한다.
3.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형태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4. “단일요금”이란 해남군 농어촌버스 전체노선 이용에 있어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군수가 정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농어촌 버스 도우미”란 여객시설이나 농어촌버스 내에서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자금이나 손실발생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행
2. 농어촌버스 도우미 운영
3. 여객자동차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비의 신청) ① 운수사업자가 제3조의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선의 구간 및 산출 내역
2. 신청금액

제5조(사업비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등

② 제4조제2항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 및 운송 수입금 조사용역 등의 실시 결과를 근거로 손실금의 산출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비의 지급 결정 시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사업비의 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기부담액	원	
사업기간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 번호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세부 계획서 3. 통장 사본 ※ 필요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법인 인감 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 확 인 사 항		1. 법인 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